이 보도자료는 2019. 6. 30.(일) 09:00[7. 1.(월) 조간용]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공보담당관 지청장 강지식
전화 031-8053-4200 / 팩스 031-8053-4555

보 도 자 료
2019. 6. 30.(일)

자료문의 : 형사2부장실
전화번호 : 031-8053-4390
팩 스 : 031-8053-4324
주책임자 : 부장검사 이동언

제 목 **필리핀 폐기물 부정 수출 사건 수사결과**

▣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강지식)**은 폐기물을 필리핀에 부정 수출한 사건과 관련하여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 업자 7명 및 3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수사 결과, 국내 폐기물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각종 환경 규제가 강화되어 **국내 처리 비용이 상승**하자 폐기물을 그대로 **해외로 반출**, 무단 투기함으로써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금번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관련 범죄로 인한 **불법적인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

Ⅰ 주요 수사경과

1 사건의 배경

- 국내 폐기물재활용 업체가 '합성 플라스틱 조각'으로 수출 신고하였음에도 아무런 처리 공정을 거치지 않은 생활 폐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하였다가 '18. 11. 11.경 현지 세관에 의해 적발된 사실 등이 언론에 다수 보도되었고, 결국 '18. 12.경부터 '19. 2.경까지 폐기물 약 3,394톤이 평택항으로 반송되었음

- 이에 평택직할세관, 한강유역환경청, 평택시는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업체 현장을 점검하는 등 수사에 착수였고,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9. 3.경 위 기관들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신속하게 보강수사**를 진행하였음

2 주요 수사경과

- '18. 11. 16. 한강유역환경청, 평택세관, 평택시 특사경 합동점검
- '19. 2. 28. ~ 3. 5. 평택지청, 평택세관·한강유역환경청 수사지휘
- '19. 3. 15. 및 3. 20. **사건 송치**(평택세관→평택지청, 환경청→평택지청)
- '19. 3. 21. 관련 업체 사무실(평택, 서울, 고양), 주거지(천안) 등 **6개 장소 1차 압수·수색**
- '19. 4. 11. **폐기물 수출업체 대표 A,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대표 B 구속**
- '19. 5. 16. 관련 업체 사무실(평택, 화성) **2개 장소 2차 압수·수색**
- '19. 5. 29. 해외 도피 중인 **주범의 친동생인 C 구속**
- '19. 6. 7. 본건 이전 평택항에서 보관 중이던 **폐기물 약 6,000톤을 반출하여 인천 서구 등지에 불법 보관**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 D 구속**

Ⅱ 주요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1 폐기물 수출업체 G사 前 대표 A

- '18. 1. 12.경부터 '18. 7. 18.경까지 세탁·건조·분쇄 등 공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정을 모두 거친 것처럼 거짓으로 수출입관리폐기물 신고서를 제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 '17. 12. 15.경부터 '18. 11. 11.경까지 허위로 수출 신고한 폐기물 16,413톤을 부정 수출(기수 8,578톤, 미수 7,835톤) **[관세법위반]**
- '18. 3.경부터 9.경까지 허가받은 보관 시설이 아닌 평택·아산 소재 타 업체 부지에 폐기물 합계 약 9,400톤을, '18. 4. 13.경부터 현재까지 군산·평택 소재 물류창고에 폐기물 합계 약 9,337톤을 불법 보관 **[폐기물관리법위반]**

2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J사 대표 B

- '18. 7. 18.경 세탁·건조·분쇄 등 공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정을 모두 거친 것처럼 거짓으로 수출입관리폐기물 신고서를 제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 '17. 12. 15.경부터 '18. 11. 11.경까지 허위로 수출 신고한 폐기물 2,500톤을 부정 수출(기수 1,460톤, 미수 1,040톤) **[관세법위반]**
- '18. 3.경부터 9.경까지 허가받은 보관 시설이 아닌 평택·아산 소재 타 업체 부지에 폐기물 합계 약 9,400톤을 불법 보관 **[폐기물관리법위반]**

3 G사 前 영업부장, 해외 도피 중인 총책의 친동생 C

- '17. 12. 15.경부터 '18. 11. 11.경까지 허위로 수출 신고한 폐기물 10,913톤을 부정 수출 (기수 7,118톤, 미수 3,795톤) **[관세법위반]**

4 폐기물 재활용업체 K사 대표 D

- '18. 11. 7.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서구 왕길동에 폐기물 8,794톤을, '19. 2. 27.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연수구에 폐기물 372톤을 불법 보관 **[폐기물관리법위반]**

⇒ 총 **4명 구속 기소, 10명 불구속 기소**

Ⅲ 범행 구조

1 국제 협약에 따른 폐기물 국가 간 이동(수·출입) 요건

- 1994. 5. 28. 발효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의하면, 폐기물은 생산된 국가 안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출국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기술적 역량과 필요한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폐기물이 수입국의 재활용 또는 회수산업의 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허가하여 개발도상국으로 유해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2 폐기물 수출 관련 절차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① 관할 환경청에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 신고를 한 다음 ②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다시 관할 세관에 통관 신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특히 신고서에는 수출 대상 폐기물의 발생 공정*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음

※ 분리-파쇄-분쇄-세탁-건조 중 어느 단계까지 이행하였는지 여부

3 폐기물 부정 수출의 범행 동기

- 전 세계 폐합성수지의 대부분을 사들였던 중국 정부가 2017. 1.경 폐합성수지 수입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폐합성수지 재활용 순환 구조에 정체 현상이 발생하였고, 폐자재 단가가 급락하면서 자원 재생 시장이 유례없는 불황을 겪게 되었음

- 또한 국내 폐기물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각종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소각이나 재생원료 생산이 어려워지자 전체 폐기물 처리 용량이 폐기물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해 수십만 톤의 폐기물이 방치되기에 이르렀음
- 위와 같은 이유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은 배출장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더라도 폐기물을 다시 인계할 최종처리업체를 물색하기 어렵고, 최종처리업체를 찾는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비싼 처리비로 인하여 영업 이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였음
- 본 사건의 경우도, 필리핀에 거주 중인 총책과 A가 위와 같은 점을 노리고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에게 접근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처리비를 제안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다량 확보한 다음 처리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필리핀으로 수출하여 현지에 무단 투기할 것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됨

4 이 사건 폐기물 부정 수출의 구체적 범행 내용

<신고서 상 폐기물 수출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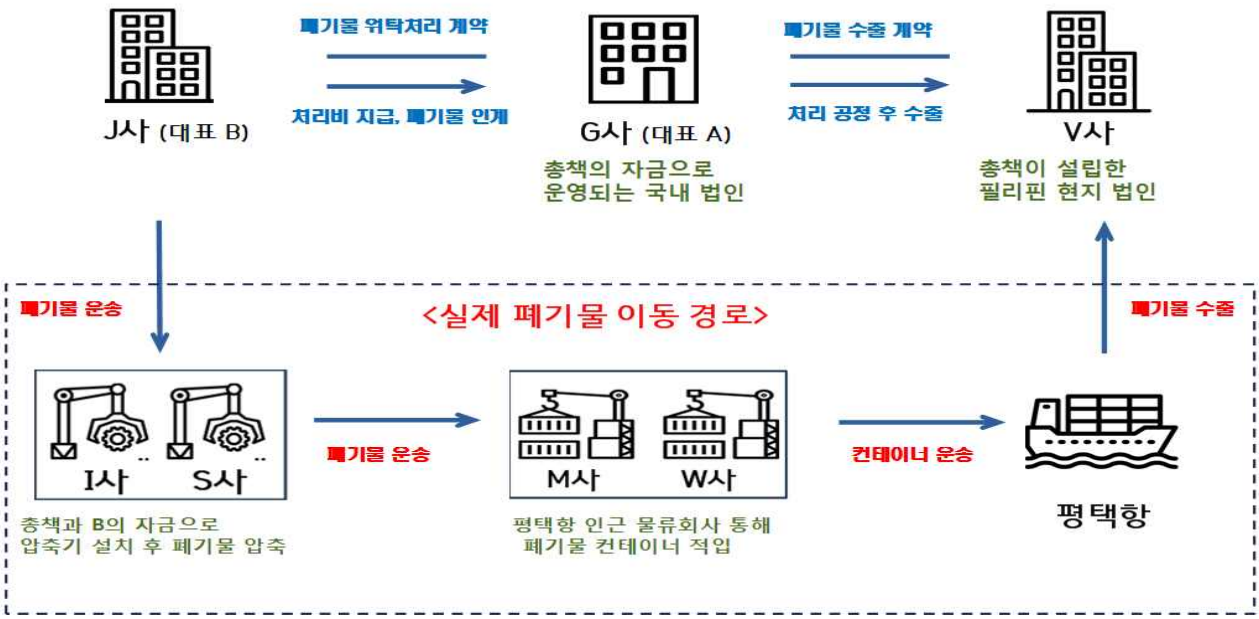

- G사가 제출한 수출신고서에는 세탁·건조·분쇄를 모두 마친 폐합성수지를 수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G사는 공장 시설을 전혀 가동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생활쓰레기 등이 다량 혼합된 폐기물을 배출된 상태 그대로 타사 업장에서 단순 압축·포장한 다음 선적하였음

● 또한 범행 과정에서 수출용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평택 인근 최대 규모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J사 대표 B와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폐기물을 부정 수출하였음

⇒ 결국 이 사건 폐기물 수출 범행은 ① 다량의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업체(J사), ② 수출 신고 등 절차를 진행할 업체(G사), ③ 필리핀 현지에서 폐기물을 수입·통관할 업체(V사) **3사의 조직적 협조 체제**로 이루어짐

※ J사는 최초 배출자로부터 톤당 약 15만 원을 지급받고 G사에 톤당 약 1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압축비를 공제한 차액 취득, G사는 J사 등으로부터 톤당 약 10만 원을 지급받고 V사에 톤당 $25(한화 약 3만 원)를 지급한 다음 운송비(톤당 약 3~5만 원)를 공제한 차액 취득

Ⅳ 수사 결과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전국적인 규모의 범행

● 수사 결과, G사가 필리핀에 부정 수출한 폐기물 중 상당량은 제주도 회천 매립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외에도 피고인들은 평택항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 고양시, 경북 성주군 등지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수출하였음

* 평택항으로 반송된 폐기물에서는 제주산 폐기물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현재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중에는 제주산 폐기물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음

● 또한 피고인들은 제주도에서 반출한 폐기물을 평택항 이외에도 군산항과 광양항으로 운송하여 불법 보관하는 등 불법 폐기물 수출이 특정 지자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님이 확인되었음

2 향후 동종 사건 재발가능성 농후

● '19. 2.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 불법 폐기물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해외에 불법 수출할 목적으로 항구 내에 보관 중인 폐기물이 약 3만 4,000톤에 달하고, 그 외 방치 폐기물(83만 9,000톤)과 불법 투기 폐기물(33만 톤) 중에서도 상당량이 불법 수출을 목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추정됨

※ 실제 수사 과정에서, 평택항을 통한 수출이 어렵게 되자 인천항에서 수출을 시도하기 위해 평택항에 적치되어 있던 약 6,000톤의 폐기물을 인천 서구 왕길동 등지에서 불법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업자 3명을 인지하고 1명을 구속하였음

- 2018년도 한강유역환경청에 접수된 폐기물 수출 신고는 약 700여건에 이르나, 직원 1~2명이 신고 수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건과 같은 허위 신고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향후 유사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3 폐기물 관련 범죄수익 환수제도 개선 필요

- 폐기물 허가증을 매입하여 폐기물 처리업체를 인수한 후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처음부터 폐기물 방치 목적으로 폐기물 허가를 받는 사례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나,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무허가 처리업자의 행위만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폐기물을 방치·투기한 실제 행위자로부터 범죄로 인한 불법 수익을 몰수·추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 **(개선방안)** 폐기물 투기·매립·소각(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1항, 2항), 허가받은 보관장소 외 보관 및 허가받은 중량·기간 초과 보관(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제2호) 행위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 범죄로 추가하여 범죄로 인한 불법적인 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입법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V 참고사항 - 평택항 내 반송 폐기물 처리 경과

- 필리핀에서 반송되어 평택항 보관 중이던 폐기물 총 4,666톤은 '19. 4.경 대집행 절차가 시작되어 '19. 6. 7.경 전량 처리 완료되었음

※ 전체 중량 중 1,460톤은 J사가 회수하여 직접 처리, 나머지 3,206톤은 위탁소각 처리 (대집행 비용 중 약 6억 원은 환경부가, 약 3억 원은 평택시가 부담). 끝.